

사단법인 『중앙아시아개발협력연구소』 정관 Central Asian Development Cooperation Institute

2019. 11. 15.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본 법인은 “사단법인『중앙아시아개발협력연구소』”라 한다. 영문 명칭은 **Central Asian Development Cooperation Institute**라 한다.

제2조(소재지)

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국내 광역시와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에 분사무소(분소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목적)

본회는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. 개발협력사업에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교육, 직업훈련 및 지식공유 사업, SOC 확충사업, 농업 개발 및 협력 사업, 환경 및 의료보건 사업 등이 포함된다.

제4조(사업)

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중앙아시아와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학술활동
2.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조사
3. 한국의 對중앙아시아 개발협력사업(ODA 사업 등) 조사 및 지원
4. 위 사항과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
5.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기관과의 협력

위 1-4 항에 언급된 목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.

■ 학술활동

- Home page 구축을 통해 중앙아시아 정보 제공
-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의 일반 정보 및 개발환경 분석
- 학술 세미나 개최
- 중앙아시아 관련 간행물 발간(인쇄·출판)

■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조사

- 국가 및 민간인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실태조사

- WB·ADB 등 다자간개발은행(MDB)의 개발협력사업 실태조사
- 국제개발협력 관련 간행물 발간(인쇄·출판)
- 한국의 對중양아시아 개발협력사업(ODA 사업 등) 조사 및 지원
 - 한국정부(KOICA 등)의 對중양아시아 개발원조 사업
 - 한국지자체/개별기업체의 對중양아시아 개발원조 사업
 -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활용한 개발원조 사업
 - 한국의 對중양아시아 개발협력사업 관련 간행물 발간(인쇄·출판)
- 위 사항과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
 -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국내 인력의 교육 및 인력양성
 -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 진행과 관련된 현지 인력의 교육 및 인력양성

② 본회는 제3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.

1. 중앙아시아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
2. 민관협력(PPP) 및 원조효과성 증진 관련 업무

위 1-2 항에 언급된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.

-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처 또는 국제다자간개발은행(MDB), 시민사회, 기업 등의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관련 연구용역
-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의 민관협력(PPP)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
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(이하).....